보육교사 자격기준 설명회 일정

시간	내용
13:00~13:30	등록
13:30~14:00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보건복지부)
14:00~15:30	보육교사 자격기준 세부사항 안내
15:30~15:40	휴식
15:40~16:30	단체신청 담당자 교육

KCPI 한국보육진흥원

2019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기준 안내

2019. 11.

한국보육진흥원

목차

1.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제도 개요
2. 보육교사 자격기준 세부사항
3. 보육실습 세부기준
4.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5. 질의응답

PART 1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제도 개요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제도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배경

-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자격인정 기준만 갖추면 별도의 자격증 없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로 자격을 인정
- 어린이집 및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인정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보육교직원 자격기준에 대한 통일된 해석이 불가
- 이에,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체계를 구축하고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 「영유아보육법」 개정(제7153호, 2004.1.29.개정)으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 2005.1.30. 이후부터 시행
  - 「영유아보육법」 개정(제7785호, 2005.12.29.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제도 2006.12.30. 이후 시행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제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도입 배경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장애아 9인당 1인의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어린이집 및 지자체에서 특수교사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2011.8.4.), 시행(2012.8.5.)되어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고시(제2015-121호, 2015.7.1.)에 따라 2015.7.1.부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도입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는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갖춘 교사를 2016. 3. 1.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해야 함
  - (배치시기) ·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3.1. 부터
    ·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3.1.부터
    ·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3.1.부터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수여권자 및 자격검정 · 발급기관

수여권자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검정 및 발급기관

한국보육진흥원

자격증(자격확인서) 발급 관련 법령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별표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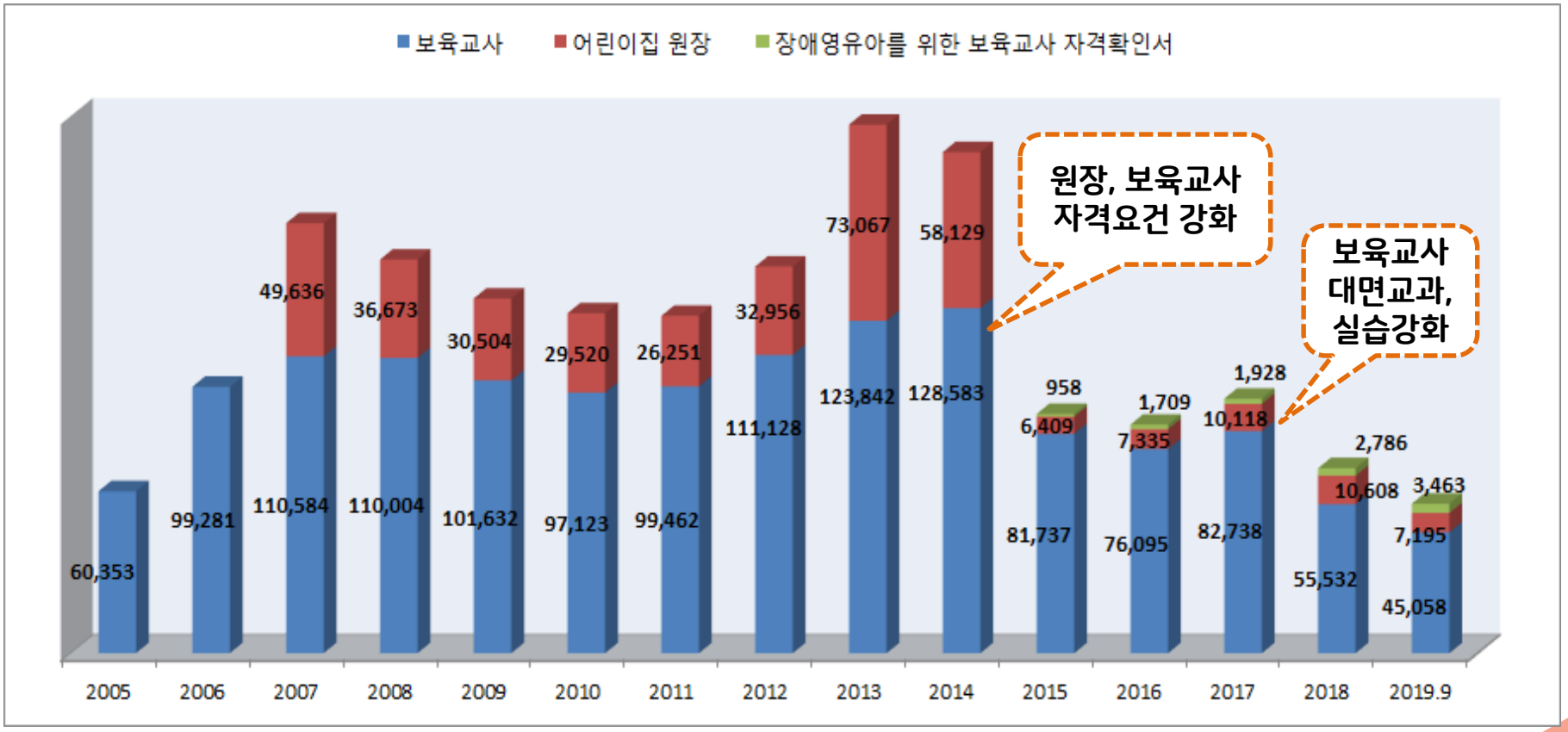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현황

연도별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 (2014) 2급 교과목 상향(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 (2017) 대면교과목 지정(9개), 실습기준 강화(160시간 ⇒ **240시간**)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 종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일반 어린이집	·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은 가정,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가정·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음
가정 어린이집	·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영아전담 어린이집	·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명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40인미만 어린이집	·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05. 1. 29. 이전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1급, 2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함

상위자격 취득 시, 하위 자격증은 발급하지 않음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 종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충족 + 장애인 복지 및 재활관련 학과 전공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충족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보육업무
일반 어린이집	· 보육교사 1급 +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유치원 정교사 1급 or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정교사 +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유치원 원장 자격 취득자 · 초등학교 정교사 or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정교사 +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사회복지사 1급 +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간호사 + 7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 공무원 +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가정 어린이집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자 · 보육교사 1급 + 1년 이상 보육업무
영아전담 어린이집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자 · 간호사 + 5년 이상 아동간호업무
40인미만 어린이집	· 2005.1.29.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 종류

보육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1급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자('05.1.29. 이전법) ·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승급자
보육교사 2급	· 양성교육과정 교육 수료자('05.1.29. 이전법)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자 · 보육교사 3급 취득 후 승급자
보육교사 3급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 수료자

상위자격 취득 시, 하위 자격증은 발급하지 않음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 종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자
	·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 이수자

어린이집 특수교사

• 어린이집의 특수교사의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별도의 자격으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특수학교 정교사 2급(유치원 과정)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 이수자 중, 이수구분이 '특수교사'인 자를 대상으로 함

자격증(자격확인서) 발급

회원가입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chrd.childcare.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발급신청서 작성

- 자격 종류(보육교사 / 어린이집 원장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선택
- 학력 등 세부사항 입력 및 신청자 증명사진 파일 등록

수수료 결제

- 수수료 10,000원 납부 ※ 서류접수 이후에는 자격증 신청 취소 및 수수료 환불 불가

서류제출

- 자격종류 및 자격기준 별 제출서류 확인
- 자격 신청 구비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제출

자격검정

- 제출서류를 통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수수료결제 및 서류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

자격요건		내용
충족	인정	자격요건 충족으로 자격 인정됨
불충족	보류	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재검정 진행
	특수사례	검정위원회 안건 의결을 통해 검정 진행
	불인정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자격 인정불가

자격증 (자격확인서) 발급

- 자격 인정 건의 자격증/자격확인서 제작 및 발송

PART 2

보육교사
자격기준 세부사항

KCPI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확인방법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관 확인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대학 입학 또는 학위취득 시점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 이수기준 확인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2016.8.1. 시행</th><th>2014.3.1. 시행</th><th>2005.1.30. 시행</th></tr>
<tr><td colspan="2">교과목 이수기준</td><td>3개영역
17과목 51학점</td><td>6개 영역
17과목 51학점</td><td>6개 영역
12과목 35학점</td></tr>
<tr><td rowspan="2">적용
기준</td><td>대학
입학자</td><td>2017.1.1.~ 입학자</td><td>2014.1.1.~2016.12.31
입학자</td><td rowspan="2">'05.1.30. 이후
입학자 및 편·재입학, 전과,
복수전공 신청자 부터</td></tr>
<tr><td colspan="2">※ 편입·재입학 등의 경우
1. 편입·재입학한 사람의 경우 편입·재입학한 동학년의 이수기준에 따름
2. 복수전공의 경우 주전공 입학년도에 따름</td></tr>
<tr><td rowspan="2"></td><td>학점은행제등
학위취득자</td><td>2018.1.1. 이후
학위취득자</td><td>2014.3.1.~2017.12.31.
학위취득자</td><td>'05.1.30. 이후 교과목
이수한 학위취득자 부터</td></tr>
<tr><td colspan="2">관련근거</td><td>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개정, 2016.8.1.시행)</td><td>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개정, 2014.3.1.시행)</td><td>보건복지부령 제14호,
(2005.1.29.개정, 2005.1.30.시행)</td></tr>
</table>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확인방법

대상별 적용기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입학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입학년도 기준

· 편·재입학한 사람의 경우, 편 · 재입학한 동학년생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교과목 이수 기준 적용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학위취득자

학점은행제 를 통한 학위취득,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백석예술대학, 세계사이버대학, 영남사이버대학, 정화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학위취득일 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나머지 교과목을 학점은행제 등으로 이수한 경우, 학위취득일 기준으로 이수 기준 적용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자「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등
*「평생교육법」제31조, 제33조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주요 변경내용 (교육영역 변경)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4]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 개정)

개정전

- 보육필수 (6과목)
- 발달 및 지도 (1과목 이상)
- 영유아 · 교육 (6과목 이상)
- 건강 · 영양 및 안전(2과목 이상)
-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등(1과목 이상)
- 보육실습

현재

- 교사 인성 (2과목 필수)
- 보육지식과 기술
  (9과목 필수, 4과목 선택)
- 보육실무 (2과목 필수)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1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 **(대학) 2017.1.1. 이후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
  - 다만, '17.1.1. 전 입학한 사람이라도 '17.1.1. 이후에 아래의 대상 교과목에 대한 교육을 시작한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이수
- **(학점인정 기관) 2018.1.1. 이후에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
  - 다만, '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 취득한 사람이라도 '17.3.1. 전 아래의 대상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개정 기준으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

대상교과목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영	교과목	학점(학점)
교사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12학점 이상)
보육실무	필수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6학점)
전체	3개영역, 17과목 51학점 이상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2 대면교과목

- (적용대상 교과목) 9개
- (실시방법) 과목당 8시

영역	
교사인성	복지
보육 지식과 기술	동작, 아동미술), 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실무	실습

➜ 사이버대학 등 원격 교

8시간 출석 수업과 1회

과목 이수 확인서'를 통해 확인

■ 대면 교과목 확인서(2017.1.1.이후 입학자)

대면 교과목 확인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학 번 :
○ 전공학과명 :
○ 대면 교과목(명) 확인내역

구분	법령교과목	이수교과목	이수년도	대면교과목 이수 여부
교사 인성 영역	보육교사(인성)론	(예) 보육교사론	(예) 2017	(예) 이수
	아동권리와 복지			(예) 미이수
보육관련 지식 및 기술 영역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예)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실무 영역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4] 제2호에 따른 '대면 교과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상기교과목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장 ○○○ (인)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3 적용사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입학자

case 1

· 2017년 3월에 대학을 입학한 사람이 2019년 2학기에 "보육교사론"을 이수 하는 경우

➜ 대면교과목 기준 적용(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시험)

case 2

· 2016년 3월에 대학을 입학한 사람이 2019년에 시작하는 계절학기에 "아동복지(론)"을 이수한 경우

➜ 대면교과목 기준 적용(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시험)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3 적용사례 –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학위취득자

case 1

· 2020년 2월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 예정인 사람이 2017년 2월까지 “아동복지(론)”을 이수한 경우

➜ 개정규정에 따른 대면교과목 “아동권리와 복지 " 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이수’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이수년월 기준

case 2

· 2020년 2월에「 평생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학위취득 예정인 사람이 2017년 3월 이후에 “아동미술”을 이수한 경우

➜ 대면교과목 기준 적용(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시험)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4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공통

- 별도 심의 없이 유사교과목으로 인정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보육지식과 기술	보육학개론	유아교육(개)론, 영유아보육학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실무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4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6개영역, 17과목 51학점 대상자

- (적용대상) '14.1.1.이후 부터 '17.1.1.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입학자
  '14.3.1.이후 부터 '18.1.1.전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아동 권리와 복지
영유아교육	아동문학	아동문학교육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4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3개영역, 17과목 51학점 대상자

- (적용대상) '18.1.1.이후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	아동문학교육	아동문학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4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3개영역, 17과목 51학점 대상자

- (적용대상) '17.1.1. 이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입학자
  '18.1.1. 이후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	영유아발달	영아발달+유아발달 이수 → 인정

※ 단, '영아발달''유아발달'과목 이수로 '보육지식과 기술 ' 영역에서 초과되는 학점이 발생한 경우에도 각 개정 영역 (3개영역)별 이수기준은 충족해야 함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4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6개영역, 17과목 51학점 대상자

- (적용대상) '14.1.1.이후 부터 '17.1.1.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입학자

구분	인정기준
「영아발달」「유아발달」 교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한 경우	영아발달+영유아발달 이수 → 인정
	유아발달+영유아발달 이수 → 인정
「영아발달」「유아발달」 2과목 모두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영유아발달+종전기준 6개영역 중 '보육필수' 및 '보육실습 ' 영역을 제외한 선택영역에서 1과목(3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
	영유아발달+개정기준 3개 영역에서 1과목(3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유사교과목 신

· 법령교과목과 교

(기 인정된 유사교과

· 심의결과는 당해

경우 심의

유사교과목

· 유사교과목 심의

· 유사교과목 확인

· 해당 교과목의 이

→ [서식자료]

▪ 보육교사 유사교과목 심의 요청 공문

○○○대학(교)/○○○교육원

수신자 한국보육진흥원장
(경유)
제 목 ○○○대학 ○○○학과 / ○○○교육원 학생(○○○)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유사교과목 심의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학 ○○○학과 / ○○○교육원에서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유사교과목 심의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가. 대상자: ○○○(생년월일)
나. (편·재)입학일: 0000년 00월 00일
다. 심의요청 내용

법령교과목	유사 교과목명*	이수연도/이수학기	유사교과목 인정 사유	비고
○○○○○	○○○			

*대상자가 이수한 교과목 명

붙임 1. 해당학기 강의계획서. 끝.

○○○대학(교) ○○○학과장 / ○○○ 교육원장 직인날인 (필수)

기안자 ○○○ 검토자 ○○○ 결재자 ○○○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5 적용사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입학자

case 1

· '16년에 대학 입학 후, "영아발달"(3학점)을 이수하고 '16년에 휴학, '19년에 복학하여 "유아발달"을 이수해야 하지만, "영유아발달"(3학점)을 이수한 경우

➜ 인정

case 2

· '16년에 대학에 입학하여 보육필수영역에서 "아동복지론(3학점), 보육학개론(3학점), 보육과정(3학점), 보육교사론(3학점)을 이수하고 휴학, '19년에 복학하여 "영아발달" "유아발달"을 이수해야 하나, 교육과정 변경으로 "영유아발달 " 교과목만 개설된 경우

➜ 영유아발달(3학점)"을 이수하고, 발달 및 지도영역에서 "1과목(3학점)를 추가로 이수하여, 총 17과목 51학점을 이수할 경우 인정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1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 (적용대상)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 2016.8.1. 이후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
- (적용기준) 3개영역, 22과목 65학점 이수 필수, 보육실습 보육교사 2급 기준 준용
  - 과목당 평가점수는 70점 이상이나, 보육실습은 보육교사 2급 기준을 준용하여 80점 이상일 경우 인정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및 지도, 아동생활지도,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및 상담, 특수아동 이해와 지도,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지도, 아동수학지도·아동 과학지도, 영유아교수방법론, 교재교구개발, 부모교육, 영유아건강지도, 영유아 영양지도, 아동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관리	18과목 (52학점)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실습, 보육실습	2과목 (7학점)
전체	22과목(65학점) 이상	

PART 3

보육실습 세부기준

보육실습 주요 변경내용

개정전

적용대상

- ~'16.12.31. 입학자

(야간대학 등의 경우 운영실습 가능)

실습기관

- 정원 15인 이상 어린이집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현재

적용대상

- (대학) '17.1.1. 이후 입학자

실습기관

- 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등급 A, B(또는 인증유지)인 어린이집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A, B등급 이상'으로 변경됨

참고사항

※ (대학) 2017.1.1.이후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야 함

※ (학점은행제 등) 2018.1.1.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3.1 전에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기준 4주,160시간 적용

보육실습 세부기준

구분	시준
실습 운영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
실습 기간	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실습 기관	보육정원 15명 이상
	의무평가제 결과 A,B 등급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실습시작일 기준) ※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 보육실습 실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지도교사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동일기간 내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 인정시간	연속하여 평일(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 기준
실습의 평가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평가점수 80점 이상

보육실습 교과목 및 학점

1 교과목 및 학점 | 실습기간 | 실습기관 | 인정시간 | 지도교사

- **이론수업**과 **현장실습**으로 운영
- 평가점수 **80점(B학점)** 이상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인정
- **3학점** 기준으로 이수

※ 보육실습을 1, 2로 나누어 개설한 경우 합산한 학점이 총 3학점 이상

보육실습 기간

교과목 및 학점 | 2 실습기간 | 실습기관 | 인정시간 | 지도교사

- 6주 240시간
- 2회로 분할실습 가능
-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보육실습 기간

2회 분할 실습 방법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 학기 내 (전·후 방학 포함)에 2회로 나누어 실시

학기를 달리하여 보육실습 교과목(1, 2)을 개설한 경우

>> 개설학기 전후 방학에 각 1회씩 나누어 실시

실습 실시 방법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이 2016.12월에 보육실습을 실시한 경우

>> 4주, 160시간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를 취득하는 사람이 2017.2월에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 4주, 160시간

※ '이수' 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의 이수연월 기준

보육실습 기관

교과목 및 학점 | 실습기간 | 3 실습기관 | 인정시간 | 지도교사

구분	기준
공통사항	• 보육정원 15인 이상
선택사항 (세가지 중 반드시 한 가지에 해당할 것)	• 의무평가제 결과 A, B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2019.6. 이후) • 평가인증제 결과 인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2017.1.1. 이후) •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보육실습 인정시간

교과목 및 학점 | 실습기간 | 실습기관 | 4 인정시간 | 지도교사

· 연속하여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의 실습 인정
· 보육실습 시간은 하루에 8시간

보육실습 지도교사

교과목 및 학점 | 실습기간 | 실습기관 | 인정시간 | 5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지도교사 1명당 동일기간 내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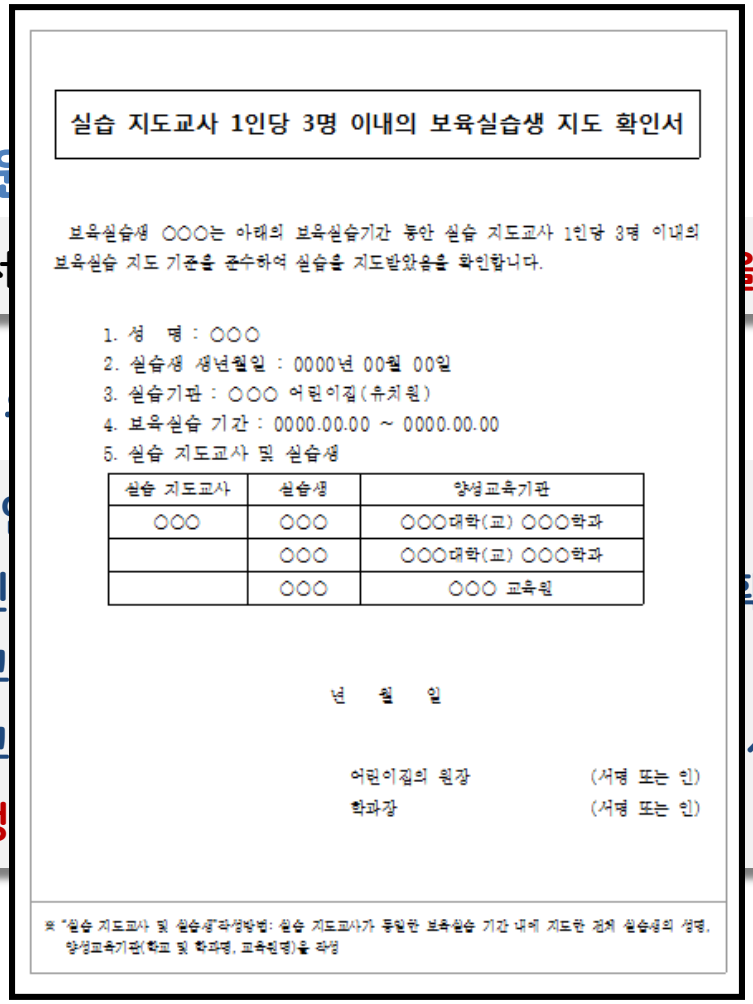
보육실습확인서

| 어린이집지원

보육실습확인서 **을 받아 원본 제출**

| 어린이집 지

- 보육실습확
- 실습기관 인 **확인 공문 제출)**
- 실습 지도교
- 실습 지도교 **서 원본**
- **방과후 과정**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보육실습생 ○○○는 아래의 보육실습기간 동안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 지도 기준을 준수하여 실습을 지도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성 명 : ○○○
2. 실습생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3. 실습기관 : ○○○ 어린이집(유치원)
4. 보육실습 기간 : 0000.00.00 ~ 0000.00.00
5. 실습 지도교사 및 실습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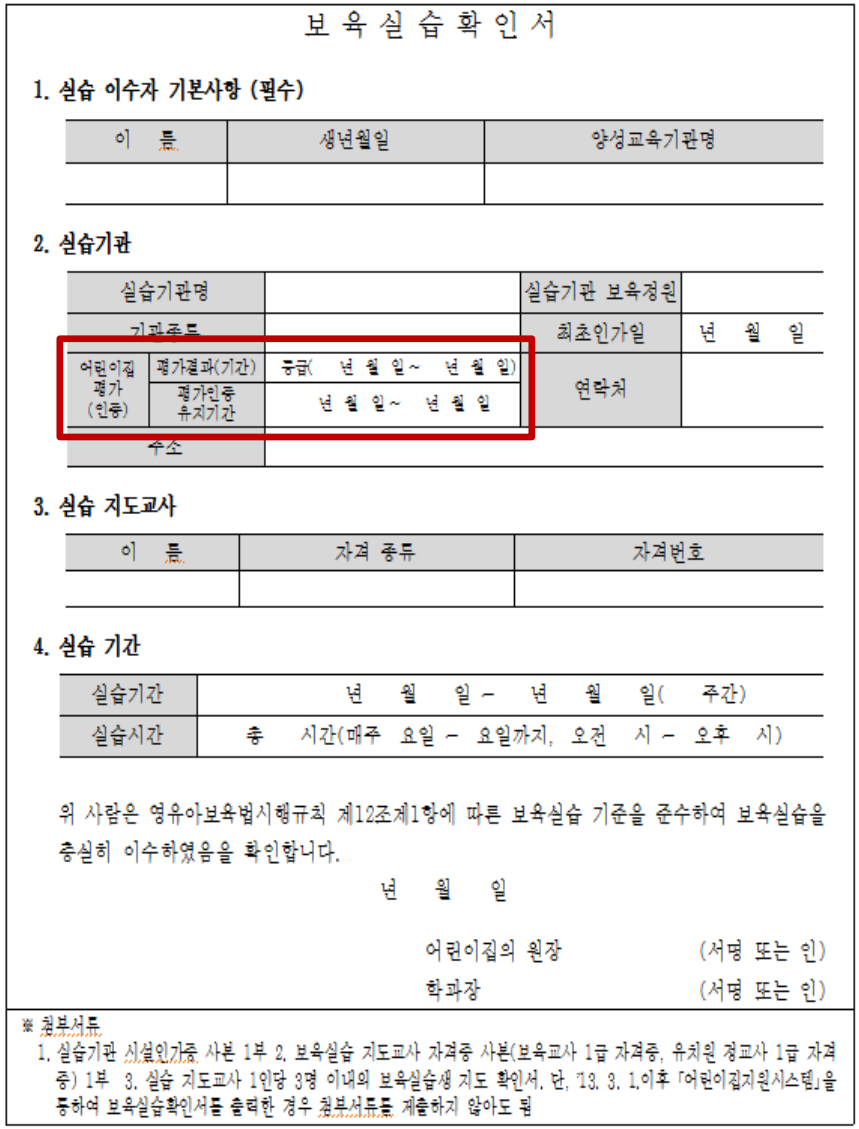
실습 지도교사	실습생	양성교육기관
○○○	○○○	○○○대학(교) ○○○학과
	○○○	○○○대학(교) ○○○학과
	○○○	○○○ 교육원

년 월 일

어린이집의 원장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서명 또는 인)

※ "실습 지도교사 및 실습생"작성방법: 실습 지도교사가 동원한 보육실습 기간 내에 지도한 전체 실습생의 성명, 양성교육기관(학교 및 학과명, 교육원명)을 작성

보육실습확인서



보 육 실 습 확 인 서

1.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필수)

이 름	생년월일	양성교육기관명

2.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보육정원	
기관종류		최초인가일	년 월 일
어린이집 평가 (인증) 평가결과(기간)	등급(년 월 일~ 년 월 일)	연락처	
어린이집 평가 (인증) 평가인증 유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주소			

3. 실습 지도교사

이 름	자격 종류	자격번호

4. 실습 기간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주간)
실습시간	총 시간(매주 요일 – 요일까지, 오전 시 – 오후 시)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육실습 기준을 준수하여 보육실습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의 원장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 1부 2.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보육교사 1급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1부 3.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단, '13. 3. 1.이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한 경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평가결과(기간) 추가**

  "보육실습 시작 당시의 어린이집 정보를 기재"

- **해당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다면 평가인증 유효기간 기재**

※ 해당 양식은 어린이집 정보공시 내용 변경에 따라 추후 변경 예정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변경된 양식 확인 (11월 중 공지 예정)

보육실습 유의사항!

실습기관 기준

어린이집 평가등급(의무평가제) 또는 인증유지상태(평가인증제) (실습 시작일 기준)

※ 미인증, 인증종료, 인증취소 사유 발생, 평가등급(A,B) 미만 여부 확인 必

※ 2회로 분할 실습의 경우, 각각의 분할실습 시작일 기준으로 평가인증 유지 必

실습연도별 보육실습확인서 양식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실습생 미등록시, 실습연도에 맞는 확인서 양식 사용

※ 보육실습확인서 양식: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서식자료] 에서 다운받아 사용

비연속 실습 증빙자료

어린이집의 가정학습기간, 실습생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증빙자료 제출

※ 가정통신문(직인 必), 진료확인서 등

보육실습 참고사항!

보육실습 지도 시 한국보육진흥원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콘텐츠 활용

온라인교육 Online Education

대한민국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Advanced Education by Research and Experience

로그인 | 회원가입

온라인교육과정 | 수강신청 | 마이페이지 | 학습지원

온라인교육과정

- 온라인교육안내
- 어린이집 평가 지표
  - 평가인증 지표에 기초한 보육활동과 상호작용
  -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
  - 어린이집 평가지표 (19.6월 시행)
- 다문화보육
- 시간연장형 시간제보육
- 안심보육교직원 연수
- 문서간소화 등 원장 집중 교육
- 보육실습 지도
  - 양성기관용 보육실습 지도
  - 어린이집용 보육실습 지도
- 2019년 보육사업안내(지침) 교육

온라인교육과정 ▸ 보육실습 지도

보육실습 지도



보육실습이란?

향후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을 받고 교사가 되고자 준비하는 학생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예비 보육교사의 역할을 경험해보는 과정입니다.

※ 보육실습 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4])

보육실습 지도

"양성기관용 보육실습 지도"는 보육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하는 동안 경험하는 보육활동 계획과 실습, 보육현장관찰 등 보육실습 시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용 보육실습 지도"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실습 지도교사가 실습생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준비사항, 운영내용과 지도방법 등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수료확인서 발급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하기 >

PART 4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자격기준 및 학점

자격기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고등교육법」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교과목 및 학점기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

- 2012.8.4. 이전 (편)입학자: 8과목 16학점
- 2012.8.5. 이후 (편)입학자: 8과목 24학점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2012년 8월 4일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기본 교과목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치료교육 실기,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 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 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 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 제작, 보육실습, 아동발달론
학점	8과목(16학점) 이상

2012년 8월 5일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기본 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보육교사론, 발달지체영유아 조기 개입
학점	8과목(24학점) 이상

표준교과개요



표준교과개요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설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의 운영을 위한 지침

2019년 2학기부터 양성기관에서 교육내용 편성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표준교과개요를 유사교과목 심의 기준으로 활용하므로 교과목 개설 시 참고
※ 자료탑재: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자료실]→[홍보자료]

PART 5

질의응답
Q&A

한국보육진흥원

알쏭달쏭~ 보육교사 자격기준

Q&A

01 대면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데, 출석 수업의 8시간을 몇 차례에 나누어 수강이 가능한가요?

대면교과목의 8시간 출석수업 시간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하되 총 출석수업 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 ※1회 이상의 출석 시험은 별도 실시

02 현장실습 시작 시점에는 평가 받은 어린이집이 아니었으나, 현장실습 기간 중에 평가 A등급을 받은 경우 인정되나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장실습 시작 당시 평가점수 A 또는 B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습 시작 이후 A 또는 B 등급을 받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제 시행 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 시작한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알쏭달쏭~ 보육교사 자격기준

Q&A

03 현장실습 시작 당시 실습기관이 평가점수 B등급이었으나 실습 중 C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실습이 인정될 수 있나요?

현장실습 시작 당시 평가점수 A 또는 B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실시한 경우, 실습 도중 등급이 바뀌어도 인정됩니다.
다만, 실습시작 당시 실습기관이 A 또는 B등급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정보공시화면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04 2020.1.1. 이후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 예정입니다.
2017.2월 이전에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실습을 완료하였는데 새로운 기준(6주, 240시간)으로 보육실습을 다시 실시해야 하나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2018.1.1. 이후 학위 취득 예정이더라도 2017.3.1. 이전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4주, 160시간 현장실습을 완료한 경우, 개정된 기준으로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알쏭달쏭~ 보육교사 자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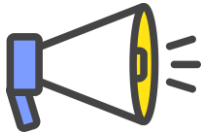
Q&A

05 2020년도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으로 4주, 160시간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2020년 2학기에 '보육실습' 교과목으로 4주, 160시간 실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습 교과목 명칭이 달라도 보육관련 교과목으로 각각 인정이 되나요?

"'보육실습'의 유사교과목으로
'학교현장실습', '교육실습', '보육현장실습'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의 경우 명칭이 달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06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연차(여름휴가 또는 연수) 혹은 병가일 경우 공백기간에는 보육실습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육실습은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을 가진 실습 지도교사에게 지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실습 지도교사의 공백기간 동안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중 1급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교사에게 실습 지도를 받으면 인정됩니다."



공지사항!

취업예정자 선처리 안내



목적	• 어린이집에 채용예정인 예비보육교사의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발급하여 보육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신청대상	• 어린이집에 채용예정인 예비보육교사(자격증 신청 후 서류제출 완료한 자)
신청기간	• 향후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또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예정
신청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취업예정자 선처리 메뉴에서 신청

[취업예정자 선처리 절차]

예비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진흥원	예비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취업 예정 어린이집에 선처리 요청	취업예정자 선처리 요청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취업예정자 선처리 신청 대상 확인 및 검정	자격 인정여부 및 자격번호 확인	임면보고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 및

국가자격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

또는 콜센터 (☎ 1661-5666) 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